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의료보호심의위원회
조례의 위원회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명변경(제2조제2항)
 - 보건과장 ⇒ 사회복지과장

3. 의안전문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 : 별첨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2조 제2항중 “보건과장”을 “사회복지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사무명	사무명
<p>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과장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	<p>충청북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</p> <p>제2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사회복지과장</u>이 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